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제공 하는 직원을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급여제공 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협의 하에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여제공은 욕구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의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급여계약내용 변경사항이 있을 시 급여변경계약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5. 급여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혹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통보할 수 있다.
6. 방문요양 급여제공범위는 장기요양직원이 수급자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인지관리, 정서, 가사 및 일상활동 등을 지원한다.
7. 방문목욕은 목욕설비이용, 가정내욕조, 목욕탕을 이용하여 장기요양직원 2명이 방문하여 제공한다.
8.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계약체결을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 인지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 (주간보호)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도중 발생하는 추가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야산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다.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기타 비용 부담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서비스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4)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에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요구를 할 수 없다.
- ⑤ 수급자의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신원인수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5. 계약의 해제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제6조, 제7조)에 의거한 사항

제6조(계약해지 요건)

-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있다.

-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연속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에 계약을 유보할 수 있다.
-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8. 부당한 방법으로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감액 및 면제를 요구할 때